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정지권 의원 외 9명

나. 의안번호 : 제2617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8. 11.

라. 회부일자 : 2021. 8. 18.

2. 제안사유

-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에 대해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한정면허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운행할 수 없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하여

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법 및 절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절차를 따름 (안 제8조제3항, 제4항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1. 8. 20 ~ 2021. 8. 27

○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) : 원안가결

- 공항버스는 시내·마을버스와는 달리 필수 대중교통수단은 아니나, 공항 이용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체의 위기극복 지원 필요성에 공감함.
- 따라서 이례적 재난상황시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·융자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한정면허 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재난 상황으로 인해 이용객 감소 및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항버스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손실이나 비용 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※ 참고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내용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 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 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나. 검토의견

-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승객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해 대중교통 분야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임

-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승객수는 전년대비 각각 22.7%, 27% 감소하였고, 운송수입금 또한 각각 22.4%(△2,758억원), 26.5%(△635억원) 감소¹⁾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노선이 정상운행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서 버스업체 운영이 힘든 상황임
- 특히, 공항버스의 경우 항공편이 막히고 여행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'20년 총 수송인원은 212만명으로 '19년 1,454만명 대비 85.4%(△1,242만명) 감소하였고, 같은 기간 운임수입은 '19년 1,571억원에서 '20년 225억원으로 85.7%(△1.346억원) 감소 되는 등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버스 중 가장 큰 손실을 입고 있음

※ 참고 :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및 운임수입 감소

구 분		소계	시내버스	마을버스	공항버스
승객수 (천명)	2019년	1,920,919	1,479,364	427,017	14,538
	2020년	1,457,499	1,143,752	311,629	2,118
	감소	463,420(△24.1%)	335,612(△22.7%)	115,388(△27%)	12,420(△85.4%)
수 입 (억원)	2019년	16,284	12,321	2,392	1,571
	2020년	11,546	9,564	1,757	225
	감소	4,738(△29.1%)	2,758(△22.4%)	635(△26.5%)	1,346(△85.7%)

- 서울시는 공항버스 업계의 운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2월, 해외입국자 전용 특별수송차량을 10대 운영하고 서울시 전체 6개 노선 12대를 최소 운영한다고 밝혔으나, 현재는 특별수송 차량 6대²⁾, 3개 노선 7대³⁾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

1) 서울시 보도자료, 「코로나19로 서울버스 승객 24%↓...공항버스는 최대 99.1% 줄어 폐선위기」, 2021.2.10.

2)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(한국도심공항 코로나19 관련 특별수송대책) 변경통보, 버스정책과-11942(2021.4.16.)

- 특별수송대책 운행차량 : 6대(예비차량 2대)

3) 공항버스 운행계통(3개 노선 7대, 2021. 07. 05. 현재)

○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하철, 시내버스, 마을버스의 방역 및 손실 지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, 공항버스는 별도의 지원 대책에 포함된 바 없고

공항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서울시와 국비를 통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으나⁴⁾, 공항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임

※ 참고 : 서울시 도시교통실 추경 세출예산안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추경				비고	
	1회	2회	3회	4회		
총 계	14,317	7,404	40,495	18,947		
지하철	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	931	-	2,726	13,568	방역비 및 운영비 지원
	지하철 9호선 2·3단계구간 위탁 운영관리	279	-	432	1,964	
	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	141	-	289	2,530	
	1~8호선 코로나19 대응지원	3,923	-	15,611	885	방역비 및 임대료 지원
버스	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	9,043	-	10,437	-	방역비 지원
	마을버스 재정지원	-	-	11,000	-	운영비 지원
택시	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	-	7,404	-	-	운영비 지원

○ 따라서, 동 개정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5)에

- 6100번 2대, 6101번 4대, 6009번 1대 운영

4) 서울시 보도자료, 「서울시-25개구, 1조 '위기극복 재난지원금'으로 민생경제의 봄 앞당긴다」, 2021.3.22.

- 운수종사자 지원(시비 100%) : 법인택시·마을버스·전세버스·**공항버스 기사 1인당 50만**

서울시 보도자료, 「서울시, 버스 운전기사 재난지원금 지급...8. 23~9. 3 신청접수」, 2021.8.16.

-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, **공항버스**, 전세버스 운전기사 **1인당 80만원 지원 (전액 국비로 지원)**

5)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**재난**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**다음 각 목의 것**

따른 재난 등의 사유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버스 한정
면허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로
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버스 업계의 최소한의 운영 기반을
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

-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
“재난”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의 감염병 외에도 다수의
감염병⁶⁾과 자연재난은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재난까지 포함
하고 있어 재정지원 근거가 광범위해질 우려가 있고,

공항버스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자금 보조는 다른 한정면허
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
있을 것임

을 말한다.

- 가. 자연재난 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- 나. 사회재난 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**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**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- 6)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**“감염병”**이란 제1급감염병, 제2급감염병, 제3급감염병, 제4급감염병, 기생충감염병,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, 생물테러감염병, 성매개감염병, 인수(人獸)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.